

# 평생교육원운영규정

제정 : 1999.10.02  
개정 : 1999.10.18  
개정 : 1999.11.29  
개정 : 2000.03.01  
개정 : 2002.04.19  
개정 : 2002.07.20  
개정 : 2008.12.17  
개정 : 2011.11.22  
개정 : 2014.11.01  
개정 : 2018.09.13  
개정 : 2020.03.01  
개정 : 2021.12.01  
개정 : 2022.10.01  
개정 : 2023.10.16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원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고 한다)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원” 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 <개정 1999.10.18., 2008.12.17., 2011.11.22., 2018.09.13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2조(설립목적) 본원은 본 대학교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3조(위치) 본원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대원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. <개정 1999.10.18., 2008.12.17., 2011.11.22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## 제2장 조 직

제4조(센터장)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원장은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5조(교직원)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7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(의결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### 제4장 설치과정

제10조(학습기간)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11조(학습일수) 본원의 주 학습 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12조(지원자격)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

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13조(선발방법)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 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14조(설치과정 등)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매학기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 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10.16.>

제15조(학습비)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② 학습비의 반환은 「평생교육법시행령」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, 2022.10.01.>

③ 강사료는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구분하여 별표1 강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제3항 본문의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와 외부 위탁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1.01.> <개정 2021.12.01.>

④ 수강료의 감면은 [별표2] 수강료 감면 지급기준과 같이 한다. <신설 2014.11.01.> <개정 2021.12.01.>

제16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제1항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##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17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18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19조(포상)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6장 회 계

제20조(회계년도) 본원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 <개정 1999.10.18., 2008.12.17., 2011.11.22., 2021.12.01., 2022.10.01. 2023.10.16.>

제21조(예산 편성)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 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22조(수입원) 본원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 2023.10.16.>

1. 학습비
2. 본 대학교 보조금 <개정 1999.10.18., 2008.12.17., 2011.11.22., 2021.12.01.>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 훈련 시)
4. 기타 수입

제23조(회계 집행)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10.01. 2023.10.16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명변경) 이 규정은 평생교육센터운영규정에서 평생교육원운영규정으로 규정명을 변경한다.

<별표1>

<강사료 지급기준>

구분	정규과정		비정규과정	
	대상	기준액(원)	대상	기준액(원)
특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교의 교수 이상</li> <li>○ 예술인, 종교인 및 언론인으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li>○ 기업, 기관, 단체의 임원 및 중역으로서 원장이 인정하는자</li> <li>○ 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</li> <li>○ 연구소 연구위원(3년이상 경력자)</li> <li>○ 3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○ 박사학위를 소지한 4.5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○ 도 및 시의회 의원, 도 교육위원</li> <li>○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	시간당 100,000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</li> <li>- 전현직 장·차관(급)</li> <li>- 전현직 대학총장(급)</li> <li>- 전현직 국회의원</li> <li>-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</li> </ul>	-1시간 :300,000원  -초과매시간당 :150,000원
일반 또는 일반 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않는 강사</li> </ul>	과정별 총 수강료 수입 금액의 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·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</li> <li>○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</li> <li>○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.5급 이상 공무원</li> </ul>	-1시간 :150,000원  -초과매시간당 : 70,000원
일반 나급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</li> </ul>	-1시간 :100,000원  -초과매시간당 : 50,000원
일반 다급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 대학(교)의 전임강사</li> <li>○ 6,7급 공무원</li> <li>○ 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5년 미만의 경력자</li> <li>○ 평생교육원 강사로서 1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○ 기타 동등한 등급에 속하지 않는 강사</li> </ul>	-1시간 : 30,000원 ~70,000원
보조 강사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기 구분 등급에 속하지 않는 강사</li> </ul>	- 1시간 : 30,000원

※ 위 지급단가로는 강사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한다.

※ 교내 전임교수 및 평생교육원 모집과정 중 수강생이 50%이상·이하일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금액을 상·하향 조정하여 지급한다.

<별표2>

<수강료 감면 지급기준>

구분	할인항목	할인율(%)
1	본교졸업생, 연속수강자, 이중등록자, 단체등록자(5명이상)	10%
2	단체등록자(10명이상), 연속수강자(5회이상), 자매학교 재학생, 자매학교 교직원 가족, 본교와 산업체간 MOU체결된 기업체	20%
3	본교 재학생, 본교 교직원 가족, 현직교사(유·초·중·고), 자매학교 교직원,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	30%
4	본교 교직원(외래·겸임 교수, 산학협력단 직원 포함), 60세 이상 어르신	50%